

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
규약 동의안



구 미 시

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新도청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·서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8개
시·군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 추진
- 나. 중·서부권의 잠재적 발전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한
연계사업발굴 등 상호협력의 틀 구축

2. 주요내용

- 가. 안) 제1조~제4조 : 협의회 설치 목적, 구성, 조직, 사무소 위치
- 나. 안) 제5조 : 주요 처리사무에 관한 사항
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설정
 - 국·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- 재원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
- 다. 안) 제6조 :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
- 라. 안) 제7조~제8조 :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
- 정기회 : 연 2회(상·하반기)
 - 임시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

- 마. 안) 제9조~제10조 : 협의사항의 준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바. 안) 제11조 : 간사와 서기 지정 방법
- 사. 안) 제12조~제13조 : 경비부담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
- 자치단체 별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 구성
 - 실무협의회의 역할 및 활동사항
- 아. 안) 제14조 :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
- 자. 안) 제15조~제16조 : 규약개정 및 보칙에 관한 사항

3. 규약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

제1조(목적) 본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95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·서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경상북도 중·서부권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, 구미시, 상주시, 군위군, 의성군,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김천시장, 구미시장, 상주시장, 군위군수, 의성군수, 고령군수, 성주군수, 칠곡군수로 하고, 회장은 시·군 편제 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, 시·군 편제순에 따른 차기 회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, 협의권과 표결권을 갖는다.

제4조(사무소 위치)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.

제5조(처리사무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
2. 중·서부권 개발 국·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4.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
5.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·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및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려는 안건이 있는 경우 회장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.

② 협의안건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·표결 권한을 부여한다

제7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,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⑤ 회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모든 회원

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청취)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 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다.

제9조(협의사항 준수) 협의회에서 합의·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의사항의 조정)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와 서기)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12조(경비부담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, 납부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
③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④ 간사는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금의 수입·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되, 안건의 성격에 따라 안건과 관련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.

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.

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,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
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안건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무인계)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잔액을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5조(규약개정) 협의회 규약 개정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6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생략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

② 생략

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가. 행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시·군별 **연간 부담금**(운영경비소요) 발생
- 나. 행정협의회 설치 당해연도에 공동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**연구용역비 부담분**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행정협의회 설립에 따른 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
예상 됨
- 나.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구분	2017	2018	2019	2020	2021	합계
연간 부담금(a)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15,000
연구용역비(b)	20,000	-	-	-	-	20,000
총 비용(a+b)	2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35,000

※ 규약안에 따라 행정협의회가 설립 될 경우 '17년 23,000천원을 포함하여 '21년까지 35,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

4. 작 성 자

안전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조용경(054-480-6753)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김 언 태
	담 당 자	조 용 경 (480-6753)